

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655
----------	------

2020년 9월 4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0년 7월 13일, 서윤기 의원 외 42명

나. 회부일자: 2020년 7월 14일

다. 상정일자: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20년 9월 4일 상정·수정안 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: 서윤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도록 함(안 제10조제2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 법령: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

나. 예산 조치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4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: 이재효)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과태료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2020년 4월 2일, 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중 인권영향평가 기준에 맞지 않는 62개 자치법규의 96개 조항에 대한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.

〈자치법규 분야 인권영향평가 권고내용 중 현행 조례 관련 사항〉

연번	인권영향평가 항목	개정 권고 조항	권고사유
6	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미비로 인한 구제권 제약	20	과태료가 부과징수되는 경우,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(조항)를 마련하여 시민의 구제권 확보

- 이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누락되어 있는바 시민들의 구제권이 제약받고 있는 상황임.

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가 부과·징수되는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(조항)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구제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.

다만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르면 관련 용어를 “이의신청”이 아니라 “이의제기”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임.

- 한편, 서울시는 현재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라 대기온도별로 공회전 허용시간을 초과한 차량의 소유주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있음.

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693건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고, 이 중 이의신청은 2018년과 2019년에는 한 건도 없었으나, 2020년에는 7건이 접수되어 현재 처리 중에 있음.

구분	0℃ 이하	0~5℃	5~25℃	25~30℃	30℃ 이상
허용시간	공회전허용	5분	2분	5분	공회전 허용

〈과태료 부과건수 및 이의신청 현황〉

과태료명	구분	2018	2019	2020.6	비고
대기환경보전 법 위반 과태료	과태료(건)	214	222	257	
	이의신청(건)	-	-	7	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수정안 요지
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라 “이의신청”을 “이의제기”로 수정함.

8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655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9월 4일
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라 “이의신청”을 “이의제기”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 골자
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라 “이에 대한 이의신청을”을 “이에 대해 이의제기를”로 수정함.(안 제10조제2항)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조제2항 중 “이에 대한 이의신청을”을 “이에 대해 이의제기를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0조(과태료의 부과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</p>	<p>제10조(과태료의 부과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_____ _____ 부과 징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_____ _____.</p>	<p>제10조(과태료의 부과 등)</p> <p>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_____ _____ 부과 징수하거나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려는 _____ _____.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부과·징수하는”을 “부과·징수하거나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려는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과태료의 부과 등) ① (생 략)</p> <p>②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 법」에 따른다.</p>	<p>제10조(과태료의 부과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부과·징수하거나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려 는 -----.</p>